

(주)에스티 협력회사 행동규범

Version 2.0

주식회사 예스티 협력사 행동규범

서 문

주식회사 예스티는 열정과 긍정에 긍정을 더한 사고로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경영, 신뢰경영, 준법경영의 가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스티는 협력사를 중요한 파트너사로 인식하고,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은 물론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 합니다.

본 규범은 예스티가 협력회사들 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범의 적용은 예스티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협력사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력회사에 조립,부품,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예스티 또는 예스티가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RBA 행동규범, 세계 인권선언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GPs),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UN 아동권리협약,직장에서의기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한 선언 등 글로벌 기준에 기반 합니다 또한 예스티 협력회사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예스티의 협력회사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기대합니다.

1. 노동/인권

1.1 근로시간

근로자는 노동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법적 권한이 주어진 모든 유형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그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1.2 강제근로(노동) 금지

근로는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하고 불이익이 없이 퇴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예,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 관련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1.3 아동노동

법적 최소 근로 연령에 미달하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 노동은 엄격히 금지하며, 합법적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근로자가 확인되면 즉시 그 고용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해 안전 보건상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법에서 정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복리후생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명세서 등을 통해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차별금지

근로자에게 학대, 체벌, 성희롱,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행위나 위협이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연령, 장애, 인종 또는 사회적 출신, 성별, 성 정체성, 국적, 결혼여부, 임신, 정치/종교적 신념, 노조가입 등의 이유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6 결사의 자유 보장

현지의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 교섭권,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2.1 산업 안전

잠재적 안전, 보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관리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을 위해 안전한 공정의 설계, 예방을 위한 정비, 안전 규정 마련 및 조치사항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 보호구를 제공해야 하며,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2.2 사업 연속성 및 비상사태 대비

비상사태와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며 지속 가능 공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른 자체 계획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2.3 산업 재해 및 질병 관리

산업 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시정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2.4 유해인자 노출저감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인자 및 고온,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 제거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교정, 개선 등의 기술적 통제 법적·제도적 요건에 따른 행정적 통제를 통해 상시 유해 요인들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 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호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위험 요소와 연관 된 리스트에 관한 교육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5 신체부담 업무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 있는 작업, 그리고 체력 소모가 많은 조립 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2.6 기숙사 및 위생시설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식사,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 비상 탈출시설, 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물품 보관함, 합리적 수준의 출입권한과 함께 적절한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7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안전관리

생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상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물리적 보호 장치, 연동 장치, 방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2.8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건강 및 안전 우려사항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사내 문화를 장려해야 합니다.

3. 환경보호

3.1 환경경영 시스템 및 환경 인허가 취득

협력사는 기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예스티에 제품,서비스 등을 제공할 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최신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고 기록/관리 하도록 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3.3 수자원 관리

수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 및 모니터링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4 대기오염물질관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파악하고 배출 현황은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5 고형 폐기물관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파악하고 저감 및 폐기/재활용 해야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6 화학물질관리 및 유해물질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운송, 보관, 사용, 폐기까지의 안정 보장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7 제품 내 물질 규제 준수

협력사는 물질에 대한 재활용 및 폐기 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윤리/공정거래

4.1 뇌물수수 금지 및 부패방지

기업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뇌물수수 또는 부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부패 관련 모든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 고발자의 비밀 유지와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4.2 개인 정보 보호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3 불공정 거래 방지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당이득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4.4 책임 있는 구매

분쟁의 영향권에 있으며 고위험 지역에서 채취된 광물 등을 포함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달 과정에서 이와 관련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 및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5 지식재산 보호

협력사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예스티와의 거래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기술자료, 정보 및 지식재산 등)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예스티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 시 타인의 특허,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6 정보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회사 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 협력회사 의 노무 안전보건 환경 관리 실태,경영 활동 , 지배구조 , 재무 상태 ,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

4.7 신원보호 와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 협력회사 및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 프로그램 비밀 및 익명성 보장 을 운영해야 합니다 . 협력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경영시스템

5.1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고위 경영진 혹은 대표를 명시해야 하며 대표자는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윤리, 환경, 안전/보건, 인권 관련 위험성을 상시 확인하고 규범 준수 및 개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5.2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여 경영 절차 내 반응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5.3 개선목표 수립

사회,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목표 및 실행 계획을 문서화해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5.4 의사소통

협력회사 의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와 관련된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해 근로자, 협력회사 및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5.5 교육

해당 법률과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법률로 규정된 법정필수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5.6 감사 및 평가

법률 및 규제 요건, 규범의 내용, 환경 등 계약상 예스티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5.7 시정조치 프로세스

내부 또는 외부평가, 검사, 조사 및 검토에 의해 확인된 미비점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8 문서화 및 기록

규제 준수와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 및 회사의 요구 사항을 지키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하며 유지합니다.

5.9 품질관리

협력사는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 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5.10 변경관리

설비, 재료, 작업 방법의 변경 등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생 시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불량 등 위험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5.11 상호간 품질관리

협력사는 자신과 거래 중인 다른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품질 지원을 통해 공급사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확보에 이바지 합니다.

내용변경 및 이력

Ver	내용	비 고
1.0	2025.08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윤리경영 및 부정방지 지침서에서 별도 협력사 행동규범으로 분리 제정
2.0	2026.08 경영시스템 시정조치 항목 외 개정	서문추가 외 안전보건 및 경영시스템 등 미비 사항 보완